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3. 17.(금)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2월 21일
- 회부일자: 2023년 3월 9일

3. 제안이유

-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구성원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보장과 자치기구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학교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학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학교구성원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보장과 자치기구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2023년 2월 2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되어 2023년 3월 9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임.
- 본 조례안은 「헌법」 제117조의 자치규정 제정권과 「지방자치법」 제28조의 조례 제정권,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에 관한 규정 중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나,

●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사항 중 일부가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관계 법령 간 중복 또는 충돌 소지가 있으며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 3. 23.>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2. 10.] [충청북도조례 제4518호, 2021. 2. 10., 제정]**

- 교육 3주체 중 일부 교원단체와 충청북도교육감 간 협약에 의해 조례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조례 제정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 3주체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의안으로 제출 된 바,

-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의 법령 위배사항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에 ‘학교’와 ‘학생’의 정의를 「초·중등교육법」 제2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회와 같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있어서 본 조례안에서 유치원은 제외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참여와 활동 가능성 여부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학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에는 ‘학교에는 학교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 회를 둔다.’ 와 같이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학교자치 조례는 위로는 학교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 초·중 등교육법), 대통령의 권한(대통령령), 교육부 장관의 권한(부령), 교육감의 권한(교육규칙)과의 연계 구조를 갖고 있어 상하위 법규 간 법률적 계통성과 체계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특수 분야의 조례로써, 학교자치 조직의 구성을 활성화하여 학교운영 의사결정에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참여를 목적으로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 없이 조례로 학교에 학생회, 교직원회 등 특정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법률적 위반이나 충돌 소지가 있음.

따라서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상위 법령 위반이나 충돌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임의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조례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직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조항이라 판단됨.

현재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인천, 부산 총 7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광주를 제외한 6곳의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회, 교직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연번	조례명	제·개정일	비고
1	강원도 학교 자치 조례	2021.6.4.	제정
2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2019.11.11.) 2021.8.10.	(제정) 개정
3	전라남도 학교자치 조례	2020.11.5.	제정
4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2019.2.1.	제정
5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2019.3.1.	제정
6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	2020.11.9.	제정
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	2022. 2. 16.	제정

○ 안 제5조에는 학생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자치활동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된 학칙 내에서 자치활동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 조례안의 학생회 설치, 구성과 기능에 관한 규정은 각급 학교의 학칙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의 학부모회에 관한 규정의 경우,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현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에는 교사회와 직원회와 같이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직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교원과 일반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교직원 전체가 동의하는 각각의 학교운영 참여 권한 배분과 기회 보장, 책임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같은 사항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직원회 구성과 운영은 학교 행정조직 구성원들 간 이해상충 갈등·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민주적 학교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심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 현행 학교운영의 모든 책임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 학교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법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있음.

이에 학교 현장에서 본 조례안에 근거하여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구성·운영될 경우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가 학교장의 자율적인 학교운영권 및 책임성을 침해하거나, 서로 충돌할 수 있고,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교육 3주체의 자치기구는 학교운영 관련 의사결정의 적시성, 합리성,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교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이런 측면에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인 교육 3주체 자치기구의 법적 성격 및 기능 설정이 학교 내 직위 및 기구 간 충돌이 없도록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학교자치를 통한 학교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3주체 자치기구의 역할과 기능,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의 총괄적 책임이 있는 학교장의 학교운영 자율성 보장과 책임성 보호에 관한 규정이 보완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 3주체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학교자치가 학교운영 및 학교교육 전 과정에 걸쳐 학교교육 당사자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헌법」 제31조)하고 있는 헌법정신과 연계된 교육의 자주성 보장과 직결되어 있고, 교육자치 실현 측면에서 볼 때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되나,
- 전체적으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중복 또는 충돌 소지가 있고,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과 공청회, 학교자치 조례 제정 교직원단체 협의체 협의를 통하여 다양한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수정 보완이나 조례안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위한 노력 없이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된 바,(첨부자료 1, 2)

- 교육자치 실현과 발전을 위해 학교자치활동 확대 필요성과 중요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의 입법적 미비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미비하여 조례 제정 및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학교자치 조례의 법체계적 위상이 기본권 형성이 아닌 기본권 확인적 측면, 제도적 보장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학교자치의 헌법정신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학교자치가 교육자치를 위한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례 수준에서의 자치 법 규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수준에서의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첨부자료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제정 입법예고 기간 제출의견	학교자치과 민주시민교육팀
		2022.10.17.(월)

■ 의견조회

- 의견조회 기간: 2022. 9.23.(금) ~ 10.13.(목)
- 방법: 공문, 팩스, 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우편 등
- 제출의견: 총 111건(공문서 접수 54건, 팩스접수 22건, 전자공청회 등록 35건)

■ 제출의견 검토

- 공문접수: 54건(수정 및 보완 의견 4건, 폐지 의견 50건)

조례안	의견	사유	검토사항
안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② <u>학교의 장은~제시한 의견을 존중하며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u>	② <u>학교의 장은~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u>	존중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시할 필요 있음.	행정절차법 제4조①“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학교구성원이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며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명시함
안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③ <u>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제시한 의견을 상호 존중한다.</u>	~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며 제시한 의견에 대한 <u>책무를 다한다.</u>	상호존중은 제시한 의견에 대한 책무가 없어 ‘책무를 다한다’라고 해야 취지에 적합함.	교육기본법 제12조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규정과 ③“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과 제13조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책임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책무를 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취지에 부합함.
안 제4조(자치기구의 구성) ②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u>자치권을</u>	~ <u>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한다.</u>	교육감은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의 장은 ‘노력해야 한다’ 라는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3조① “교육감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학교의 장은 단위학교에서 자치권의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

<p><u>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u></p>		<p>‘노력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p>	<p>해야 함’을 분명히 하여 단위학교의 자치 실현 의지를 구체화하고자 함.</p>
<p>안 제5조(학생회)</p>	<p>폐지</p>	<p>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하면, ‘학교자치 활동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 규정대로 학칙에 의거하여 학교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는 것이 교육적임. 학교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임.</p>	<p>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교육기본법 제5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학교에 학생회를 두는 것은 학생의 자치활동의 권장·보호 방법의 일종이고, 이 조례안은 학교에 학생회를 두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나 불이익을 상정하고 있지 않은 바, 강제가 아닌 권장으로 보임. 학칙으로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임. 학생 자치활동 권장과 보호 방법으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로서 입법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법률유보나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p>
<p>안 제6조(학부모회)</p>	<p>폐지</p>	<p>상위법에 의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참여하고 있음. 별도 학부모회 법제화는 혼란 야기함. 학부모회 구성은 교직원 업무부담 가중.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됨.</p>	<p>기 제정된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중복되는 것이 아닌 학교자치조례에서 준용되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학부모회 구성을 위한 교직원 업무의 추가 부담은 없음.</p>
<p>안 제7조(교직원회)</p>	<p>폐지</p>	<p>교사회, 직원회를 둘 경우 교원과 행정실 직원, 비정규직 등과 갈등 유발할 수 있음. 학교장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학교 경영의 자율권 마련이 필요함.</p>	<p>교사회와 직원회를 분리하여 설치·운영할 경우 교원과 직원간의 갈등 유발이 우려되어 교직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학교 여건에 따라,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교원과 직원 간분리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음.</p>

<p>안 제7조(교직원회) ⑤ <u>교직원회는~협의한다.</u></p>	<p>⑤ <u>교직원회는~협의한다</u></p>	<p>자치기구의 책임성과 실천력을 강조하기 위해 ‘심의’로 규정해야 함. 협의 권한만 있을 경우 유명무실한 형식에 불과하며 업무가중만 있을 것임.</p>	<p>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한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관해 ‘<u>협의</u>’하도록 함</p>
<p>안 제7조(교직원회) ⑤의 1.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p>	<p>삭제</p>	<p>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주요안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일의 절차가 중복되어 업무 가중 가져올 수 있음.</p>	

○ 팩스 접수: 22건(찬성 의견 14건, 반대 의견 8건)

조례안	의견	사유	검토사항
<p>안 제4조(자치기구의 구성) 등 안 제5조(학생회) 안 제6조(학부모회) 안 제7조(교직원회)</p>	<p>찬성</p>	<p>교육3주체가 학교 운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높여 학교장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공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신뢰 높일 수 있음.</p>	<p>학교자치조례 제정으로 인한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기대 의견임.</p>
<p>안 제5조(학생회)</p>	<p>반대</p>	<p>학생과 관계 없는 학교 예산 등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타당성 결여되고, 학생은 학령기 및 성장기 등 합리적 제한 등을 통해 학교 운영에 참여해서는 안 됨.</p>	<p>학생회의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예산과 집행 및 결산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고,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함. 학생들의 발달과정과 여건에 맞게 학생생활과 밀접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하여 참여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음.</p>
<p>안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해야 함</p>	<p>반대</p>	<p>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조항에서 지역주민이 포함된다면 학교를 정치적인 이념의 장이 될 우려 있으며 학생회와 학부모 및 교직원 회의와 의견 상충될 경우 불신이 깊어질 것임.</p>	<p>교육기본법 제5조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p>

다.		<p>다“에 ‘등’의 표현이 있어 학교운영의 참여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나, 이 조례에서는 제1조에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이므로 ‘등’을 삭제하여 학교 운영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겠음.</p>
----	--	--

○ 전자공청회(홈페이지) 등록: 35건(반대 의견 35건)

조례안	의견	사유	검토사항
<p>안 제4조(자치기구의 구성) 등 안 제5조(학생회) 안 제6조(학부모회) 안 제7조(교직원회)</p>	반대	<p>-학생들은 의사를 결정하기에 미숙하고 권리보다 책임을 배우게 하여야 하고,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다분함. -학생회의 결정에 따른다면 학교행정의 결정 사항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갈등이 생겼을 경우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 -학교자치조례 제정 이전에도 민주적으로 학교운영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서 ‘등’으로 인해 주체가 모호함.</p>	<p>-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배울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음. -학교는 학생회의 결정만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민주주의는 합의에 이르는 토론과 설득 과정,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과 수용 등을 참여과정을 전체적으로 학습하게 됨. -조례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임. -제3조①의 ‘등’은 제1조에 따라 삭제하여 학교운영 참여의 범위를 명확히 하겠음.</p>

■ 제출의견 종합

○ 원안대로 하되, 제3조① 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음.

조 례 안	수 정 안
<p>안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충청북도교육감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p>	<p>안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충청북도교육감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p>

【첨부자료 2】

	<h2 style="color: blue;">학교자치조례 제정 협의체 협의 결과</h2>	학교자치과 [민주시민교육팀]
		2022. 8. 23.(화)

■ **협의 개요**

- (일시) 2022. 8.23.(화) 15:00~16:30
- (장소) 충북교육연구정보원 1층 분임실
- (참석)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교육청노조, 전공노, 공무원본부, 비정규직노조
단체 7명, 담당 부서 3명 총 10명
- (안건) 조례안(기본안)에 대한 단체별 의견 공유

■ **협의 내용**

- (단체별 의견)

교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 법률로 규율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해결, 조례지상주의 우려 - 상위법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보장되어 있으므로 중복될 수 있음 - 자치기구간 권리 다툼으로 학교갈등 발생 우려 -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교육활동 위축
실천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회의 대표를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해야 함
새로운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와 교직원회의 권한을 ‘협의 및 심의’ 로 부여함
전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기구 ‘교사회, 직원회, 교직원회, 학교자치회’ 설치 - 자치기구의 권한을 ‘심의’ 로 규정함 - 매년 민주적 운영 실태 조사 및 조치
교사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기구 ‘교사회, 직원회, 교직원회’ 설치 - 자치기구의 권한을 ‘심의’ 로 규정함 - 매년 민주적 운영 실태 조사 및 조치
교육청 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법률 근거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운영되므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 없음 - 학교의 업무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